미래산업융합대학 학점인정제 시행

<2020.9.18.(금) 학사지원과>

1. 추진배경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인정 관련 **학사제도의 유연화** 모색

○ **평생교육체제 운영** 관련 미래산업융합대학 소속 학생의 **입학전 다른 대학** 취득학점 인정을 통한 **졸업요건** 구비

2. 제도 개요

○ **(법령)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학칙 제59조, 학사운영규정 제56조,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사운영규정 제17조**

○ **(학점) 학점인정**과 **수강신청** 학점을 **합하여 한 학기 19학점***까지 가능

* 졸업학점의 1/2 이내, 학기당 19학점 이내

○ **(수강/등록)** 학점인정 **승인 이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 고지서 별도 생성

○ **(성적)** 학점인정 교과목 성적은 등급제가 아닌 **Pass/Non-Pass제** 적용

3. 업무처리 절차

학생	학과 제출 ⇨	소속 학과	심의 요청 ⇨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교양 교육과정위원회	승인 요청 ⇨
· 학점인정 신청서 · (국내)성적표·학점인정증명서 · (국외)성적표 공증자료 or 아포스티유 확인서		· 학력 조회 · 학점인정 심의 의뢰		· 학점인정 심의 · 학점인정 결과 학과 회신	

교무처 학사지원과	결과 통보 ⇨	소속 학과	학생 확인 ⇨	학생	최종 확정 ⇨	교무처 학사지원과
· 총장승인 · 교과목 코드 생성 · 학점인정 내역 통보		· 교과목 개설 · 수강신청(대리) · 성적입력(N/NP)		· 학점인정 승인 결과 확인 · 등록금 납부		· 성적 확정 · 수강내역 삭제

4. 향후 추진 계획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메뉴 개선 및 학점인정제 시행('20. 9. ~)

【붙임】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후략>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전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③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한밭대학교 학칙

제59조(다른 대학·대학원 등의 이수학점 인정) ① 학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한 경우
4. 국내외의 고등학교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중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학점인정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6조(다른 대학 등 취득학점의 인정) ① 학칙 제59조에 따라 다른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하는 학생은 별지 제39호 서식의 학점인정신청서를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학과(부)의 학과교육운영위원회는 각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학점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학점인정 교과목은 성적표에 학점인정에 의한 학점 취득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사운영규정

제17조(다른 대학 등 취득학점의 인정) ①「고등교육법」 제23조 및 「한밭대학교 학칙」 제59조에 따른 최대 학점인정은 졸업학점 1/2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다른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점에 대해 등록을 마치고, 「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39호 서식의 학점인정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